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26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나.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 관리인 지정・관리, 소독, 휴지통 없는 화장실(예외조항 명시)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4. 16. ~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

에 적용한다.

7.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①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6.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7.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 시행규칙 제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신 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신 설>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10.31.>

제3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 관리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로 에어타올(페이퍼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1.>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7.7.17.> <개정 2018.2.27>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수도법」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④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10.>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

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7.7.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 ·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 ·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1.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2. 대 ·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 · 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2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

생용품 및 비상 알림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2.27〕<개정 2013.10.31., 2018.2.27.>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 · 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2022.12.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 ·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 관리)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방법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신설 2013.10.31>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1.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3.10.31.>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수도법 시행령」제69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10.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19호, 2005.02.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58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5호,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8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2023. 11. 1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